의 안 번 호	제120호
의결 연월일	2022. 9. 22.

는산시 홀로 시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------ 심 사 보 고 서 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, 제안자 : 2022년 9월 14일, 이태모 의원 외 5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2년 9월 14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2년 9월 22일,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이태모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O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(死後)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
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논산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·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O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O 추진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(안 제5~6조)
- O 협력체계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